

2020년도
본청[3차 - 기획감사관, 의회사무과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관)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7. 6 ~ 7. 10.(5일간) / 2017. 9월부터

■ 감 사 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3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3건 (주의 7건, 시정 6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4건 / 438,700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 수범사례 》

■ 영동군 유튜브 채널 「충북영동TV」 운영[기획감사관]

- 자체제작 동영상 공유채널을 통한 실시간 소통 강화 및 예산절감

■ 영동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의회사무과]

- 홈페이지의 기능 및 디자인 개편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3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총 13건 (기획감사관 5, 의회사무과 8)	주의 7 시정 6		회수 4건 438,700원
소계		총 5건	주의 2 시정 3		회수 2건 238,700원
1	기 획 감 사 관	◦ 공가 사용 부적정	주의		
2		◦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4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173,600원
5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65,100원
소계		총 8건	주의 5 시정 3		회수 2건 200,000원
1	의 회 사 무 과	◦ 입법고문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50,000원
2		◦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3		◦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시정		
4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주의		
5		◦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6		◦ 물품 구입 전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7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건 150,000원
8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시 증빙 소홀	주의		

기획감사관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현 황】

○ 공가 부적정 사용 내역

사용일	성명	직급	사유	비고
17.09.11.	A	**8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18.05.09.	B	**8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18.05.24.	B	**8급	충청북도 전입시험	면접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한 때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기획감사관에서는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급 A 외 1명의 전입시험 응시에 대해 공가처리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획감사관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사책추진업 무추진비	19.07.03.	언론관계자 식사제공 및 급식비 지출	21,000	-	일상경비 출납원과의 재정합의 누락	
사무관리비	19.07.03.	감고울 영동소식지 7월호 발행비 지급	6,570,000	-	일상경비 출납원과의 재정합의 누락	
사무관리비	19.08.12.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제작	577,500	-	일상경비 출납원과의 재정합의 누락	
사무관리비	20.01.29.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구입	143,000	-	지출결의서 주문일 기재 및 날인 누락	
사무관리비	20.01.29.	군정활동기록용 앨범 제작	1,770,000	-	지출결의서 주문일 기재 및 날인 누락	
사무관리비	20.02.28.	2021년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 책자 제작	165,000	-	납품서 누락	
사책추진업 무추진비	20.06.10.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00	-	약식계약 누락	
사무관리비	20.06.19.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현수막제작	560,000	-	승낙사항 날인 첨부 누락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그럼에도, 기획감사관에서는 2019. 7. 3. 언론관계자 식사제공 및 급식비 지출 외 7건에 대해 일상경비 출납원과의 재정합의 누락, 지출결의서 상 주문일 기재 및 날인 누락, 납품서 누락, 승낙사항 날인 첨부 누락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처분내용】

- 기획감사관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 액	매입가 (a)	적정가 격 (b)	차액 (a-b)	비고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용 봉투제작비(2019)	2019년 1월~12월 매월 1,428,000원	15,578	-	230	-230	매입누락
감고을 영동소식지 2월호 발행비 지급	19.02.01.	5,972	90	80	10	과다매입
감고을 영동소식지 8월호 발행비 지급	19.08.07.	5,972	90	80	10	과다매입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용 봉투제작비(2020)	2020년 1월~12월 매월 1,530,000원	16,690	-	250	-250	매입누락
감고을 영동소식지 우편발송용역	2020년 1월~12월 매월 1,359,160원	14,827	-	370	-370	매입누락
2020 군수 연두순방 군정보고서 PPT 제작	20.01.29.	3,200	50	80	-30	용역계약임에도 물품계약 기준 적용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기획감사관에서는 2019년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용 봉투 제작 외 5건에 대하여 매입대상(연간 계약으로 총 계약금액 기준 적용)임에도 채권을 징구하지 않거나,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한 필증을 접수, 용역계약에 대해 물품계약 기준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케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획감사관은 누락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 【행정상 조치】 **시정**
- 【재정상 조치】 **회수 173,600원**
- 【신분상 조치】 **없음**
-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 【현 황】

○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1,287,400	1,113,800	173,600	
2019.04.09.	**8급 C	2019.03.13.	규제혁신 속풀이 대토론회 참석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20,000	14,000	6,000	
				교통비	40,800	40,800	0	
2019.04.09.	**7급 D	2019.03.15.	영동산업단지 중재사건 관련 선임변호사 협의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20,000	14,000	6,000	
				교통비	45,400	45,400	0	
2019.05.10.	**7급 E	2019.04.29.	자치법규 정비 혁신 세미나 참석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20,000	14,000	6,000	
				교통비	10,000	10,000	0	
2019.05.10.	**6급 F	2019.04.11.	균특회계 설명회 참석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20,000	14,000	6,000	
				교통비	11,800	11,800	0	
2019.05.10.	**6급 F	2019.04.26.	정부예산확보 를 위한 예산업무 협의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15,000	7,000	8,000	
				교통비	11,800	11,800	0	
2019.08.12	**8급 G	2019.07.02	2019년 자체통계품질 진단 담당자 소집교육	일비	20,000	20,000	0	식비 과다 지급
				식비	20,000	14,000	6,000	
				교통비	5,800	5,800	0	
2020.02.07.	**6급 H	2020.01.06.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5,300	0	5,300	
2020.02.07.	**6급 H	2020.01.09.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7,800	0	7,800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2020.02.07.	**6급 H	2020.01.10.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12,400	0	12,400	
2020.02.07.	**6급 H	2020.01.13.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13,100	0	13,100	
2020.02.07.	**6급 H	2020.01.14.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7,800	0	7,800	
2020.02.07.	**6급 H	2020.01.23.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5,300	0	5,300	
2020.02.07.	**6급 H	2020.01.31.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0	0	0	
				교통비	5,300	0	5,300	
2020.03.10.	**8급 I	2020.02.13.	2020년도 충청북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일비	10,000	10,000	0	교통비 과다 지급 (공용차 이용)
				식비	7,000	7,000	0	
				교통비	18,600	0	18,600	
2020.03.18.	**6급 J	2020.03.18. ~ 2020.03.19.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지자체 견학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4,000	34,000	0	
				교통비	54,100	54,1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3.18.	**8급 I	2020.03.18. ~ 2020.03.19.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지자체 견학	일비	40,000	4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4,000	34,000	0	
				교통비	54,100	54,10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10.	**6급 J	2020.06.05. ~ 2020.06.06.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일비	20,000	2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2,000	32,000	0	
				교통비	0	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10.	**6급 K	2020.06.05. ~ 2020.06.06.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일비	20,000	2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2,000	32,000	0	
				교통비	0	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10.	**8급 I	2020.06.05. ~ 2020.06.06.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일비	20,000	2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2,000	32,000	0	
				교통비	0	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2020.06.10.	**8급 L	2020.06.05. ~ 2020.06.06.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일비	20,000	20,000	0	숙박비 초과 지급
				식비	32,000	32,000	0	
				교통비	0	0	0	
				숙박비	50,000	40,000	10,000	

【위법부당사항】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는 별표2¹⁾에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기준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 1박당 4 ~ 7만원(정액지급 시 4 ~ 6만원, 실비정산 시 5 ~ 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그러나, 기획감사관에서는 [현황]과 같이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8급 C 외 4명의 경우 출장시간과 달리 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6급 H 외 1명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교통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였으며, **6급 J 외 3명의 경우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시군단위 정액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일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173,60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획감사관은 과오지급된 여비 173,6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1) 국내여비 운임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철도운임(실비-일반실), 선박운임(실비-2등급), 항공운임(실비), 자동차운임(실비), 일비(1일당 20,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5,1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1.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구분	근무 구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미준수 시간	적정 시간	비고
					(분)	(분)	(분)	(분)	
2018-03-31	**7급	M	토요일	현업	9:32	18:00	28	480	산불비상근무
2018-03-31	**7급	N	토요일	현업	9:23	18:00	37	480	산불비상근무
2018-03-31	**6급	J	토요일	현업	10:00	17:10	190	24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7급	O	토요일	현업	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018-04-01	**6급	P	토요일	현업	9:00	18:00	60	480	산불비상근무

2.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50	129	179	1,941,580	50	123	173	1,876,480	65,100	
**6급	J	11,401	10	57	67	763,860	10	55	65	741,060	22,800	2018. 3월분
**7급	N	10,299	10	18	28	288,370	10	17	27	278,070	10,300	2018. 3월분
**7급	M	10,299	10	15	25	257,470	10	14	24	247,170	10,300	2018. 3월분
**7급	O	10,299	10	27	37	381,060	10	26	36	370,760	10,300	2018. 4월분
**6급	P	11,401	10	12	22	250,820	10	11	21	239,420	11,400	2018. 4월분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시 일일 상한시간 8시간, 월 70시간 범위 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획감사관에서는 [현황1]과 같이 **7급 M 외 4명의 경우 현업으로 신청한 비상근무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현황2]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65,10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기획감사관은 과오지급된 여비 65,1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입법고문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입법고문 수당 지급현황

운영기간	입법고문	예산금액	지급금액	부적정지급액
2017. 8. 1. ~ 2018. 7.31. (1년)	서** (****기술원)	1,000,000원 (200천원×5개월)	1,050,000원	50,000원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의회에서는 의회의 안전처리 및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 그 밖에 의장이 인정하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를 입법고문

으로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의회사무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임기만료에 따라 입법고문을 재위촉하면서 당해 예산 및 조례에서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입법고문수당지급(12월)[2017.12.27.]” 시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250,000원을 지급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과오지급된 수당 50,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처리 부적정 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국내여비	17.09.06.	기본업무추진여비(8월분)	1,300,000	-	지출결의서상 재무관 날인 누락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7.09.20.	황간면 직원 격려 식사제공	200,000	-	지출결의서상 채권자명 착오기재	
의정운영 공통경비	17.09.20.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510,600	-	납품서 누락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외상영수증 만 첨부
의정운영 공통경비	17.09.28.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336,100	-	납품서 누락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외상영수증 만 첨부
사무관리비	17.09.28.	의회청사 환경정비	1,800,000	-	약식계약체결 누락	
의정운영 공통경비	17.10.30.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483,800	-	납품서 누락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외상영수증 만 첨부
사무관리비	17.10.30.	근무복 구입	600,000	-	개인명의(U) 포인트 적립 6,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7.11.21.	수행직원과 급식	50,500	-	지출품의 내부결재 금액(50,000)	
의정운영 공통경비	17.11.30.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596,000	-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외상영수증 만 첨부
의정운영 공통경비	17.12.20.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321,000	-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외상영수증 만 첨부
의정운영 공통경비	17.12.27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380,000	-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지출결의서 지출일기재 누락	
공공운영비	18.05.18.	관용차량 수리	340,000	-	완료확인서 담당자 확인날이 누락	
의정운영 공통경비	18.05.18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502,700	-	납품서 누락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부적정 사항	비고
재료비	18.06.18.	의회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화분 구입	600,000	-	납품서 누락	
의회운영업 무추진비	18.06.18.	현충일 추념 화환구입	100,000	-	납품서 누락	
의정운영 공통경비	18.06.20.	의원 내방객 접대물품등 구입	333,750	-	납품서 누락	
사무관리비	18.06.29.	제8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방석 및 소파커버 구입	670,000	-	납품서 누락	
자산및물품 취득비	19.04.12.	영동군의회 속기록 키보드 구입	5,720,000	-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사무관리비	19.04.16.	의정홍보용 사진인화	913,000	-	약식계약체결 누락	
사무관리비	19.05.31.	의정홍보용 사진인화	946,000	-	약식계약체결 누락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되어야 함.
- 그럼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2017. 9. 6. 기본업무추진여비지급 외 19건에 대해 지출결의서 상 재무관 날인을 누락, 채권자명을 착오 기재, 납품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누락, 약식계약 체결누락, 지출결의서 상 날짜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복구입 시 개인명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지출결의서를 사본으로 편철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 소홀

【현 황】

○ 법인카드 관리 현황

발급일자	카드번호	법인포인트	보관책임자		용도	비고
			직	성명		
16.01.12.	5585-****-****-****	104,821원	**6급	Q	업무추진비	의장
17.02.14.	9430-****-****-****		**6급	Q	일반회계지출	
19.07.31.	5585-****-****-****		**6급	Q	업무추진비	부의장
19.09.03.	5585-****-****-****		**6급	Q	업무추진비	수행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고,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 카드 발급대장에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그럼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104,821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카드발급대장 비치 및 카드포인트 104,820원을 세입조치 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2017년도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위탁 교육	17.10.19.	12,160	330	300	30	과다매입
위원회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18.05.24.	18,200	300	270	30	과다매입
2018년도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위탁 교육	18.10.19.	10,538	280	260	20	과다매입
영동군의회 속기록 키보드 구입	19.04.12.	5,200	80	70	1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2017. 10. 19. 지급한 2017년도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위탁 교육 외 3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김주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단위:원)

건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전자복사기 소모품 교체	17.11.29	968,000	AA	통합발주(총 2,261,000원)하여야 하나 분리하여 지역개발채권매입(3만원)누락, 수의시담 없이 계약체결
전자복사기(전문위원실) 소모품 교체	17.11.29	1,293,000	AA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	18.06.12.	6,580,000	BB	통합발주(총 11,570,000원)하여야 하나 분리하여 지역개발채권을 4만원 적게 매입하고 수의시담 없이 계약체결
의장 책상 및 옷장 구입	18.06.12.	1,310,000	BB	
본회의장 카페트 구입	18.06.12.	770,000	BB	
부의장실 집기 교체	18.06.12.	2,910,000	BB	
영동군의회 의원사무실 파티션 설치 공사	19.03.14.	9,009,000	CC	설계금액 100%로 계약 (수의시담 미이행)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19.04.16.	10,800,000	DD	통합발주(총30,800,000원) 하여 수의견적입찰로 계약상대자를 정하였어야 하나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집행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19.04.16.	20,000,000	DD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함[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함.(수의시담)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수의시담 생략 가능)

- 따라서, 2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에는 수의시담없이 계약가능하고,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시담(비교견적 등 시장조사 등을 통한 가격 조정)을 하여 계약하고, 2천만원 초과인 물품 계약 시 일반입찰 또는 수의견적입찰을 통해 계약하여야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럼에도, 의회사무과에서는 2017. 11. 29. 계약한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 2건에 대하여 통합발주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나 분리발주하여 채권매입을 누락하였고, 2018. 06. 12. 계약한 사무실집기 구입 외 3건에 대하여 분리발주하여 지역개발채권을 4만원 적게 매입토록 하였으며, 총 11,570,000원에 달하는 물품구입에 대해 수의시담 없이 견적 100%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04. 16. 계약한 본회의장 마이크 및 음향장비 구매 건은 총 계약금이 30,800,000원 이나 수의견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분리발주하여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강신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 구입 전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 물품구매 현황

(단위: 천원)

건명	수량	단위	용도	집행일 (계약일)	계약방법	추정금액	지급액	비고
계	2건					44,000	40,020	
위원회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1	set	노후 음향장비 교체	18.05.03. (18.05.03.)	수의계약	22,000	20,020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1	set	"	19.04.16. (19.04.16.)	수의계약	22,000	20,000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일상감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객관적 위치에서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인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2018.05.03.에 위원회회의실 노후 음향장비를 교체하면서 추정금액 22,000천원, 2019.04.16.에 본회의장 노후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추정금액 22,000천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구매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50,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 (원)	적정 지급액 (원)	과오 지급액 (원)	부적정 사유
합 계				560,000	410,000	150,000	
2017.09.06.	**7급 K	2017.08.30.	영동포도축제 한마당 행사 참여	20,000	10,000	10,000	공용차 이용
2017.09.06.	**7급 R	2017.08.31.	의정자료 수집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7.09.06.	**7급 S	2017.08.07. ~ 2017.08.17.	의정업무수행	200,000	120,000	80,000	공용차사용 (8회 출장)
2017.10.12.	**6급 T	2017.09.08.	의정업무총괄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7.10.12.	**8급 U	2017.09.13. ~ 2017.09.29.	위원회 업무추진	260,000	240,000	20,000	사업추진 목적 부적정
2018.06.05.	**5급 V	2018.05.15.	의정업무총괄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2018.06.05.	**6급 Q	2018.05.15.	의정업무총괄	20,000	10,000	10,000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계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호 및 별 표1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위와 같이(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하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의회사무과에서는 [현황]과 같이 **7급 K 외 6명에 대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1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총 150,000원의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부적정 하게 지급된 여비 150,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감사자 : 박미애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시 증빙 소홀

【현 황】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일자	적요	집행액	지급처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합 계			19,342		첨부 11건 미첨부 9건
기관운영	2017.09.28.	추석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의장)	849	-	첨부
기관운영	2017.09.28.	추석명절 의정협조자 격려물품구입(부의장)	700	-	미첨부
시책추진	2017.12.30.	자매결연 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600	-	미첨부
기관운영	2018.02.09.	설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 구입(의장)	988	-	첨부
기관운영	2018.02.14.	설명절 의정협조자(기자) 격려물품구입(의장)	510	-	미첨부
기관운영	2018.02.20.	설명절 의정협조자(직원) 격려물품구입(의장)	1,200	-	미첨부
기관운영	2018.04.20.	인천 석남1동 주민자치위원회 교류협력행사에 따른 특산품 구입(의장)	900	-	첨부
기관운영	2018.09.20.	추석명절 의정협조자(기자) 격려물품구입(의장)	630	-	첨부
기관운영	2018.09.20.	추석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의장)	941	-	첨부
기관운영	2018.09.28.	추석명절 의정협조자(직원) 격려물품구입(의장)	700	-	미첨부
시책추진	2018.11.12.	제66차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오찬 제공	1,208	-	미첨부

구분	일자	적요	집행액	지급처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기관운영	2019.01.31.	설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의장)	1,680	-	첨부
기관운영	2019.01.31.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특산품 제공(의장)	600	-	첨부
기관운영	2019.02.08.	추석명절 의정협조사(직원) 격려물품구입(의장)	1,400	-	미첨부
기관운영	2019.04.30.	영동 출입기자 식사 제공(의장)	579	-	첨부
기관운영	2019.09.11.	추석명절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의장)	1,300	-	미첨부
기관운영	2019.09.11.	추석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의장)	1,032	-	첨부
기관운영	2020.01.21.	설명절 환경미화원 격려물품 구입(의장)	1,600	-	첨부
기관운영	2020.01.31.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특산품 제공(의장)	525	-	첨부
기관운영	2020.01.31.	설명절 의회사무과 직원 격려	1,400	-	미첨부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2²⁾의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이는 2004년 1월 국세청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집행할 경우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업무 관련성 입증 회피를 위해 1건을 여러 차례 나누어 결제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하는 등 민간기업의 향락성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감사일 현재까지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20건 중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을 미기재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출한 경우가 9건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의회사무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